1 뇌혈관질환 등 기준비급여 해소 세부 내역

연번	항목	급여확대 내용
<신경외과 관련 행위(1항목) 급여확대>		
1	두개강내 신경자극기설치술의 인정기준	· 운동장애의 원인부위를 자극하여 만성통증의 조절, 정신장애 등에 시도되는 시술 · (종전) 뚜렛증후군은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하거나 5년이상의 치료에 불응성인 경우에서 만 18세 이상에 급여인정 · (개선)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에도 급여확대
<이비인후과 관련 행위(3항목) 급여확대>		
2	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인정기준	·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여 청각능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· (종전)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·후 각 1회, 난청진단시 1회,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 · (개선) 횟수 제한 삭제하여 급여확대
3	외이도이물제거의 수가적용 방법	· 극히 복잡한 것 :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 · (종전)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기존 2회까지 급여인정 · (개선) 횟수 제한 삭제하여 급여확대
4	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	· 만 3~10세 소아에서 이관이 막혔을 경우,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(Politzer씨법 등) · (종전) 주 2회(3주 정도) 급여인정 · (개선) 횟수 제한 삭제하여 급여확대
<안과 관련 행위(1항목) 급여확대>		
5	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	· 눈물이 배출되는 구멍을 막는 시술 · (종전) 안구건조증 등에서 급여인정 · (개선) 안구 이식편대숙주 질환에도 급여확대
<내분비내과 관련 행위(2항목) 급여확대>		
6	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	· (종전) 비타민D 흡수장애, 만성신장병, 골다공증 등에만 급여인정 · (개선) 부갑상선기능이상, 칼슘대사이상, 약제(항레트로바이러스제, 케토코나졸 등)로 인한 비타민D 결핍에도 급여확대
7	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	· (종전) 골다공증 약물치료 3~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1회 급여인정 · (개선)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2회 이내로 급여확대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연번	항목	급여확대 내용
<뇌혈관용 치료재료(7항목) 급여확대>		
8	Detachable Coil 인정기준	· 코일을 이용하여 색전 발생시켜 뇌동맥류에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하는 치료재료 · (종전)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 모동맥의 모동맥혈관폐색은 3개 급여인정 · (개선) 혈관단경 기준 1.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사용시 사례별 인정
9	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급여기준	·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치료재료 · (종전) 구경이 2mm이상, 4.5mm이하 모혈관에서 급여인정 · (개선) 모혈관 구경 삭제하여 급여확대
10	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(흡인성 Catheter, 회수성 Stent) 급여기준	· 두개내 대형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졸중시 폐색혈관의 혈류를 재개통하기 위한 치료재료 · (종전)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· (개선) 증상발생 8시간~16시간(영상학적 뇌경색의 크기 1/5 이하,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IHSS 점수 6점 이상, Perfusion 영상에서 core-perfusion mismatch의 비율이 1.8이상인 경우)과 증상발생 8시간~24시간(영상학적 뇌경색의 크기 1/5 이하,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IHSS 점수 10점 이상)에도 급여확대
11	경피적 두개강내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	· 죽상경화성 질병이 있고, 재발성 뇌졸중이 있는 환자의 동맥내강 직경을 개선하는 치료재료 · (종전) 유증상의 70%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,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급여인정 · (개선) 두개내 혈관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% 이상 남아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급여확대
12	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	· 죽상경화성 질병이 있고, 재발성 뇌졸중이 있는 환자의 동맥내강 직경을 개선하는 치료재료 · (종전) 기존에는 유증상의 70% 이상 및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유증상의 50~69% 경동맥협착을 급여인정 · (개선) 유증상의 50% 이상 경동맥협착으로 급여확대
13	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(원위 접근용중간도관) 급여기준	· 선택한 혈관으로 폐색용카테터 등 마이크로카테터가 원위부 지역까지 원활히 삽입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 · (종전) 뇌동맥류 혈관색전술 등 적응증에서 뇌혈관의 꺾임과 굴곡이 심한 경우 급여인정 · (개선) 적응증을 삭제하고 대동맥의 꺾임과 굴곡이 심한 경우에도 급여확대
14	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(Arterio-Venous Malformation) Microclip의 급여기준	· 뇌동정맥기형적출시 혈관결찰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 · (종전) 공급혈관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 3개까지 급여인정 · (개선) 해당 혈관 당 각 1개씩 급여확대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